
**양주행복마을요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3. 10. 18.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양주행복마을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양주행복마을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양주행복마을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양주행복마을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 대표자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 ②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③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④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⑤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⑥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⑦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⑧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나. **운영(담당)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 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③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 ④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다. **모니터링(담당)자** :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 카메라 대수, 위치,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1. 양주행복마을요양원 CCTV는 총 1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① 생활침실(필수설치) : 생활침실 8대, 특별실 1대 (9개 침실 각 1대)

② 공용공간(필수설치) : 공용공간 6대

(공동거실 2대, 프로그램실 1대, 주출입구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③ 외부공간(추가설치 : 3대 (부출입구비상구 1대, 산책로 2대)

NO.	카메라번호	위치	대수	구분	비고
1	⑤	101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2	⑥	102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3	⑨	103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4	⑧	104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5	⑦	105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6	⑪	106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7	⑫	107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8	⑬	108호 행복마을	1	생활침실	필수설치
9	(21)	특별실	1	생활침실	필수설치
10	②	공동거실1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1	③	공동거실2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2	⑭	프로그램실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3	⑩	물리치료실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4	⑯	식당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5	①	주출입구	1	공용공간	필수설치
16	⑲	부출입구	1	외부공간	추가설치
17	⑱	산책로1	1	외부공간	추가설치
18	⑳	산책로2	1	외부공간	추가설치

설치구분

공동 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엘리 베이터	기타	합계
2	0	9	2	1	1	1	0	2	18

2. 안내판의 설치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

[별지 제 13호 서식]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② **안내판의 규격** : 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음
- ③ **안내판의 부착장소**
: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과 부출입구, 생활실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1) CCTV 운영 모니터
 - 2) 디지털 녹화기
 -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설치 현황)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범위** : 생활침실 전체, 특별실 전체,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주출입구, 물리치료실, 식당, 부출입구, 산책로
2.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영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영상정보 열람 가능 사유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제출 서류

-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3)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8조(영상정보 열람의 이용 목적과 사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②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